

# 맑고 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정사유

- 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 및 급변하는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제 기구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코자 함.

## 2. 관련법령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 기본조례」 제16조

## 3. 주요골자

- 가. 민간인 위원장 선임 가능 및 지역경제과장 당연직위원 추가 포함  
(안 제3조)
- 나.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로 변경(안 제7조)
- 다. 협의회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등(안 제9조)

#### 4. 검토의견

본 조례의 제정 건은

-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 및 급변하는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제 기구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환경보전자문 기구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맑고 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나
  
- 본 제정조례 제3조(구성) 제1항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은 너무 많은 인원으로 자칫 방만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2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조정 되어야 하고, 제4항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도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 제정조례 건은 일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8. 10. 28

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여 기 선

## 《 관 계 법 령 》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조례

**제16조 (환경보전 관련 협의회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 등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맑고 푸른 사하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